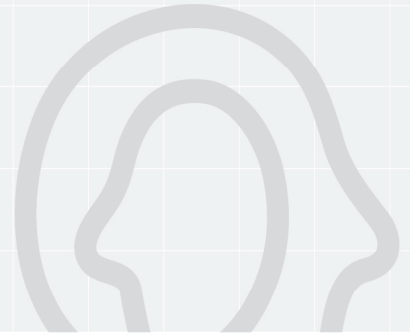


권두언

# 위기·취약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송경원



2020년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19세에서 34세에 속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법에는 아동, 청소년, 노인에 관한 법이 있다. 청년실업률과 같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기준(15~29세)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청년을 연령으로 재정의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체계를 마련한 나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청년은 사회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세력이다.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보면 청년은 성인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어려운 시기이다. 사회의 기둥이라는 측면과 독립적 사회 진출을 위한 준비기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시기이다. 과거보다 인생을 위한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은 더 많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의 삶의 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청년기본법의 취지<sup>1)</sup>이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청년의 나이가 길어진 것은 인구학적인 이유가 크다고 본다. 1970년 대한민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62.3세, 지난해는 83.6세이다. 사회 구성원을 높은 나이부터 낮은 나이로 배열했을 때 가장 중간의 나이인 중위연령은 1990년 27세에서 2022년 45세로 올라갔다. 평균 초혼 연령은

1) 청년기본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청년기본법 제2조)'하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여 청년의 발전을 지원(동법 제3조)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본법 이전의 청년 정책이 일자리 등 고용 중심의 시각이었다면, 청년기본법을 통해 주거, 일자리, 복지, 문화 등에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 점이 다른 점이다.

1990년 남성 27.8세, 여성 24.8세에서 2022년 남성 33.7세, 여성 31.3세가 되었다. 기대수명, 중위연령, 결혼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1990년대까지는 '20대=청년'이라는 인식이 가능했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은 백세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

청년이 당면한 현실 문제가 중요해지면서 청년 중 위기·취약 청년들도 다양한 형태로 많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 과제(91번: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를 통해 취약 청년 지원을 향후 5년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명시하였다. 국정 과제를 반영해 2023년 2월 28일 청년기본법에 '취약 계층 청년'의 정의<sup>2)</sup>가 마련되었고, 국가와 지자체에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되었다. 취약 청년 지원은 이후 생애과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크다. 사회적으로는 이행 지체를 겪는 취약 청년 증가에 따라 함께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2021년 한국경제연구원은 구직단념청년(NEET·직업이 없으며 훈련과 교육도 받지 않는 청년 무직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약 62조 원가량으로 추정한 바 있다. 과거에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 미혼 부모 등 개별 정책 대상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은 존재하였다. 하지만 사업별로 분절되어 동력을 얻기 어려웠던 한계

가 있었으나, '청년'이라는 연령 집단으로 묶어 낸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생애주기 차원에서의 정책 필요성이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취약한 청년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위기·취약 청년 문제 해결에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다.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청년과 같이 그동안 부각되지 않았던 취약 청년 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시작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상황이 청년대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나, 가장 잠재력이 높은 시기인 청년의 삶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어떤 지원이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위기·취약 청년의 범주가 다소 애매한 측면은 있는데, 개정 청년기본법에서는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하였다. 위기·취약 청년의 대상을 넓게 보고 새로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감안해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찾아낼 필요가 있다.

위기·취약 청년의 의제화는 특정 집단의 소외로 귀결되어서는 안 되며, 최종적으로 전 사회와 세대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5호.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전체의 문제 해결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립·은둔 청년의 문제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고독사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원인으로서는 경제적 실패와 사회적 단절이라는 같은 맥락 위에 있다. 정책 프레임이 ‘고립·은둔 청년’이나 중장년의 ‘고독사’와 같은 현상에 치중하게 되면 개인의 소외와 단절이라는 근본적 원인을 놓친 미시적 처방에 그치기 쉽다. 청년의 위기·취약 현상은 청년기에만 갑자기 등장한 문제가 아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가정과 사회·경제적 기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생애의 전 주기를 거친 요인을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도 중요하다.

위기·취약 청년이 호소하는 고통의 원인은 결국 취업, 주거, 교육, 건강이라는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들이다.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청년과 그 속에 현실의 벽을 넘기 어려운 위기·취약 청년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 보건복지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석과 정책 과제들이 위기·취약 청년을 다시 돌아보고 청년세대를 넘어 전 세대에 거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